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05. 6. 23)되어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추가(안 제5조)
 - 나. 시 조례에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과 구 조례에서 규정한 종류별 표시방법을 조합하여 조문 일원화
(안 제8조 내지 제17조)
 - 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종류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등을 신설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합법화(안 제10조)
 - 라.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
(안 제19조 내지 제20조)
 - 마.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마련
(안 제21조 내지 제26조)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등이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각종 법규위반 행위는 없는지, 공인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의 현실 부적합 부분을 개정(안 제33조)

■ 허가·신고 수수료 조정내용

(단위:원)

광고물의 종류	현 행	개 정	비고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10개 이하 5,000	1개당 4,000	
○ 전주·가로등의 배너기	10개초과시 5개당 2,000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10,000	50,000	
○ 비행기·선박 양측면	2,000	10,000	
○ 차량 양측면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05. 10. 25~2005. 11. 14
(20일간, 별도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05. 6. 23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광고물 관리업무가 특별 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기타 약간의 구체적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35개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 현재까지 주요사항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이중 일부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구청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 전부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한 것인데, 이는 관련조례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안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춘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은 글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며, 각 조문을 상세히 검토한결과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2005. 12.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